

#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과정

- 제출자 : 민부기 의원 외 4명
- 제출일자 : 2020. 11. 13.
- 회부일자 : 2020. 11. 25.
- 상정 및 의결 :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20.11.25.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 : 민부기 의원)

### 가. 근거법령

- 「병역법」 제82조
- 병무청 훈령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

### 나. 제안이유

-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# 다. 주요내용

-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지원 및 우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성완)

-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원과 홍보함으로써 병역명문가로 예우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